경찰항공기 검사정비 과업지시서

1. 항공기 검사정비 기본업무

경찰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체·엔진 및 부속품의 검사정비(일반·특수 검사정비, 수리, 개조, OVERHAUL 등) 지원을 신속·정확·원활하게 하는데 있다.

2. 정비회사의 검사정비 내용

경찰보유 항공기(BELL412, BELL206L-3, A109C-MAX, AWI19Ke)의 기체 · 엔진 · 부속품 및 장비의 검사정비 등

3. 용역의 주체

경찰헬기(BELL412, BELL206L-3, A109C-MAX, AWI19Ke)에 대한 제작사 또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인증(AMO)을 보유하고 헬기의 재생수리를 위한 공장정비 업무한정을 보유한 정비 전문 업체

4. 과업 지시내용

- 가. 정비회사는 경찰항공기의 정비결함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나. 경찰항공기의 검사정비시 긴급업무로 정비기간 단축을 요청하면 근무시간 이후에도 검사정비 하여 정비기간을 단축 시켜야 한다.
- 다. 경찰항공기의 검사정비시 경찰보유 부속품이 없을 때에는 국내·외에서 긴급히 조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.
- 라. 경찰항공기가 비행이 불가한 긴급 검사정비 발생시 헬기가 위치한 장소까지 신속히 출장하여 검사정비를 지원해야 한다.
- 마. 항공기 및 엔진 제작사 기술회보에 의한 부속품 교환 및 검사정비시 정비회사는 해당기간내에 기술지시를 수행완료 하여야 한다.
- 바. 경찰에서 운영하는 항공기와 관련된 기술정보 입수시 신속히 전파하여 경찰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정상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- 사. 기타사항은 정비계약서에 의한다.

경비국 항공과

2025년 2월 12일 경사 김 지 훈